

##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0년 11월 6일 조례 제1844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양양과 오산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「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재향경우회”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오산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.

**제3조(사업 지원)**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
2. 아동·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4조(지방보조금 신청 등)** 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5조(중복지원 금지)**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.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